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의무화 》

■ 윤종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79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윤중오의원 대표발의(제2214779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의무화 (안 제2조제16호 신설 및 제87조제1항)	3

I. 윤종오의원 대표발의(제2214779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종오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12. 2.

다. 회 부 일 : 2025. 12.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은 상당수 건설노동자의 사실상 유일한 노후소득 보장 수단임. 그러나 민간 발주 현장에서는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만 퇴직공제부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50억 원 이하 현장은 대부분 퇴직공제부금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정한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더라도 소방·배관·전기 등 분리발주 공종별 발주 금액이 5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공종 건설노동자에게는 퇴직공제부금이 적립되지 않아 같은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공종에 따라 노후보장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총공사금액”을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으로 정의하고,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을 개별 공종별 금액이 아닌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분리발주에 따른 건설노동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퇴직공제부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호 및 87조제1항).

3.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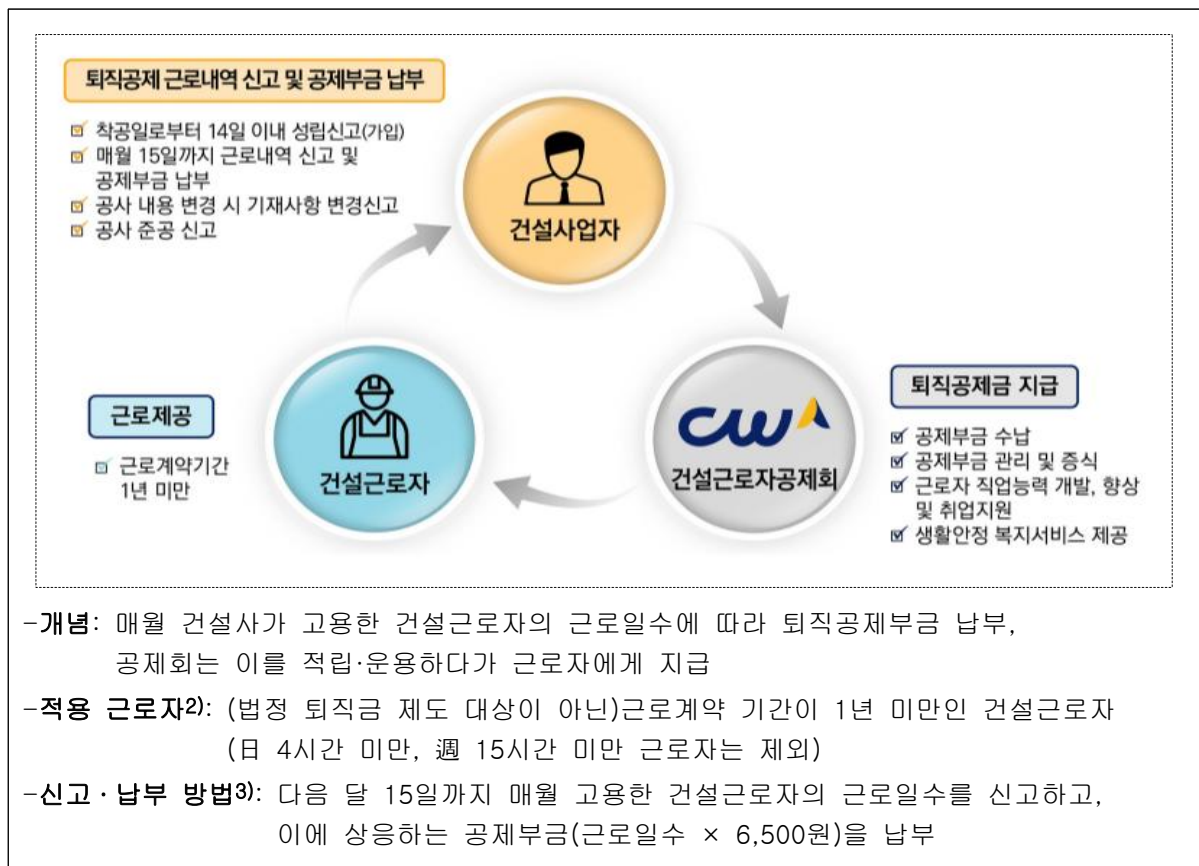
가.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의무화 (안 제2조제16호 신설 및 제87조제1항)

개정안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설계비 제외)을 ‘총공사금액’으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공사금액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5. (현행과 같음) 16. “총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설계비 제외)을 말한다.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건설공사를</u> 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 ----- <u>총공사금액 이상의 건설공사를</u>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이하 “퇴직공제”라 함)¹⁾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共濟賦金)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 개요 】



※자료: 국토교통부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事業主)”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하 “건설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거나 한 자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원수급인(元受給人)”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4. “하수급인(下受給人)”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와 그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5. “**퇴직공제(退職共濟)**”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共濟賦金)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함) 제10조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1.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법 제11조제1호에서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1일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공제부금) ① 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제회에 매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하고 공제부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공제부금 납부 및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의 신고 등) ③ 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과 공제부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4)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引受)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 외의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통령령⁵⁾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함)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법령 및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조항을 살펴보면,

현행법령⁶⁾에서는 ‘건설공사’⁷⁾를 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공사에정

③ 삭제 <2007. 7. 27.>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퇴직공제의 가입방법 및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퇴직공제는 사업주가 건설업을 폐지한 날의 다음 날이나 그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 날에 관계가 소멸한다.

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해당되며, 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이라 함.

6)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 2의2.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3.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0호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5.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설공사(「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금액, 공동주택의 호수, 오피스텔의 실수 등을 기준으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8)에서는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국가유산수리공사(이하 “전기공사등”이라 함)’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공제에 당면 가입해야 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7.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7)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퇴직공제의 당면 가입 대상)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해당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4.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의 당면 가입 대상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

「건설근로자법」 제10조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는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됨.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사업자 ※참고조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업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 <u>공사예정금액</u>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u>1억 원 이상</u> 인 공사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 <u>공사예정금액</u>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이 <u>1억원 이상</u> 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6조 각 호
2.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u>	2. <u>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해당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u>
2의2. <u>제2호에 따른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u>	
3.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u>200호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u>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u>민간투자사업</u> 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u>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u>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u>민간투자사업</u> 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u>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u>
5.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u>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설공사</u>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u>2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설공사</u>	
7. <u>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u>	4. <u>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u>

이 중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한 요건들을 살펴보면, 현행법과 「건설근로자법」이 서로 유사하게 ①공공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현행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4호,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②민간 건설공사는 공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현행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7호,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6조제4호)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공공 건설공사’와 ‘민간 건설공사’는 퇴직공제 당연 가입요건이 각각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과 50억원 이상으로 차이가 있고,

또한, 현행법에 따른 건설공사⁹⁾에 비하여 전기공사등이 상대적으로 공사예정금액 규모가 작은 점¹⁰⁾을 고려하면, ‘현행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전기공사등’ 간에도 퇴직공제 제도 적용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을 ‘총공사금액’¹¹⁾이라는 개념으로 정의 규정에 신설하고, 전기

9)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10)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년 2월에 발표한 발주 예정금액은 공종별로 건축공사 11조 원(273건), 토목공사 1.5조 원(56건), 전기·통신·소방공사 2조 원(442건), 조경공사 5천억 원(56건), 기타공사 1조원(118건)이었음.
(한국토지주택공사 보도자료, “LH, 올해 역대 최대 17.1조 원 공사·용역 발주”, 2024.2.28.)

11) ‘총공사금액’이라는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에서 사용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서는 ‘총공사금액’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음.

공사등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를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퇴직공제 제도가 적용되는 민간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전기공사등 간 퇴직공제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¹²⁾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고용관리 책임자 지정·신고) ②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이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총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2)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 발채

- 민간 발주 현장에서는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만 퇴직공제부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50억 원 이하 현장은 대부분 퇴직공제부금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한 현장

50억원 이하 민간공사 건설근로자들 및 상대적으로 공사금액 규모가 작은 전기공사등의 건설근로자들이 퇴직공제 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건설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각각의 분리발주가 의무화되어 있는 전기공사등의 금액 합계를 ‘총공사금액’으로 규정하는 데 대한 법리적 검토와 함께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공사예정금액’의 조정이 합리적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입장¹³⁾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현행법 제2조제4호¹⁴⁾가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에서 전기공사등을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공사등에 대하여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공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총공사금액’에

에서 공사를 수행하더라도 소방·배관·전기 등 분리발주 공종별 발주 금액이 5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공종 건설노동자에게는 퇴직공제부금이 적립되지 않아 같은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공종에 따라 노후보장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13) 고용노동부는 법정 퇴직금 수령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음.
(관계부처 합동,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 2025.2.27. p.23. 참고)

1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전기공사등의 비용이 포함되는 점을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 정의 규정의 수정과 이에 따른 「건설근로자법」 및 동법 시행령 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국토교통부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부금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행법은 전기공사등을 현행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 정의에서 제외하고 있어 총공사금액 개념을 현행법에 규정하기는 어렵고, 퇴직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법」의 개정을 통해 제도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고용노동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전기공사등을 각 소관 부처에서 개별 법률¹⁵⁾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하나의

15) 「전기공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절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監理)·유지관리·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공사예정금액'의 조정을 통해 퇴직공제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대한건설협회는 소규모 건설공사에도 퇴직공제 적용이 확대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 근로일수 신고, 공제부금 납부 등¹⁶⁾ 행정 및 비용 부담이 과중하고, 현재 건설사업자가 퇴직공제 비용을 초과 지출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나 해당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바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의 계상요율¹⁷⁾의 인상 또는 비용 정산의 근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② 공제부금은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과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인 부가금으로 한다.

③ 피공제자는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공제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제4항에 따른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유 등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91

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산정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1. 산정기준

○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 직접노무비 x 2.30%